6장

금품 ·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는 공무원들의
주요 비위 중 하나이며,
언제든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는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수수해서는 안되며, 만약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금품 등을 받게 되었더라도
그 즉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사례1

세무조사 기간 중 금품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모 기업에 대한 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의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기업 대표이사 B로부터 영전 축하 및 부하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통보 되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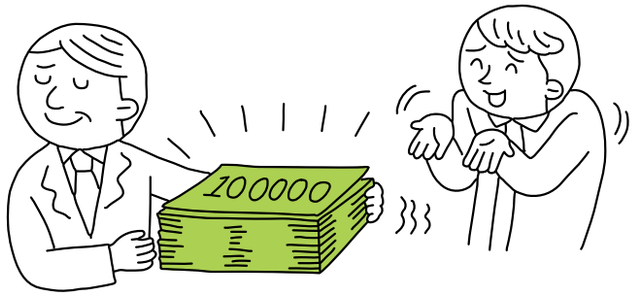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A가 대표이사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이의가 없는 점, A는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특히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를 의결함.

세무조사 기간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영전 축하 및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례2

세무공무원의 향응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식재료 공급 제조업체인 모 기업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기간 중 일식당에서 위 기업 대표 B로부터 7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날 유흥주점에서 2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3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가 과거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기에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함.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 · 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_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15.8.19. 시행)

구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3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기간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면 그 세무조사의 결과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례3

회식비 명목의 금품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모 기업의 대표자 B로부터 직원회식비 등 의례적인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고, 배우자의 병원비 명목으로 다시 200만 원을 수수해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되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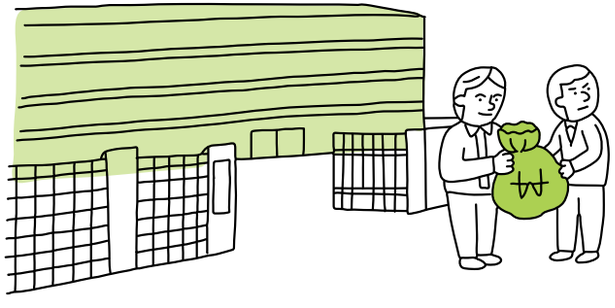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해당 기업이 A가 근무하고 있는 청사 내에 공장을 두고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함.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식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징계양정 시 참작사항은 되지만 금품수수 자체는 반드시 징계사유의 대상이 됩니다.

사례4

허위공문서 작성 및 금품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외국인 9명을 불법고용하여 단속된 모 기업 대표이사 B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직무와 관련하여 총 34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총 69회에 걸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69장을 허위 작성 · 행사하였으며, 총 117회에 걸쳐 공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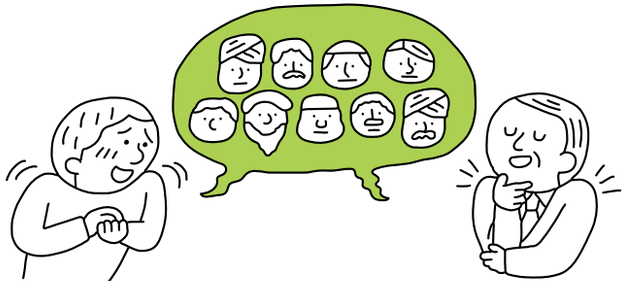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함.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불법고용 외국인 숫자를 축소해 주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례5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 금품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지역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후 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설계평가에서 모 건설기업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다음, 해당 건설기업 상무인 B로부터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하수슬러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하여 1심 법원에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40여 일의 구속을 통해 겪은 고통과 진정한 참회가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 또는 제131조의 사후수뢰죄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및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형사판결이 징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고,

공무원으로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및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금품수수 당시 고의가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이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면 뇌물죄로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서 징계처분이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6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1. 징계사유

공직자 A는 골프장에서 직장동료 주무관 B와 업체 관계자인 C, D와 함께 골프를 치고 모 건설기업 대표이사 C로부터 110,000원을, ○월 ○일 동 장소에서 직장동료 B, E, F, 업체관계자 C와 함께 골프를 치고 위 기업 대표이사 C로부터 85,000원을, ○월 ○일 또 다른 골프장에서 직무관련자 G로부터 568,000원 등 4회에 걸쳐 총 763,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수수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수수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함.

※ 관련자 조서: 주무관 E 감봉1월에 징계부가금(485,000원) 1배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했다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국민은 이런 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례7

사무실에 고액 금품 보관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직무관련자인 모 기업 현장소장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93,636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청사 사무실 내 자신의 책상 서랍과 서류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뇌물수수 의혹을 야기함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복리를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렴성과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켰기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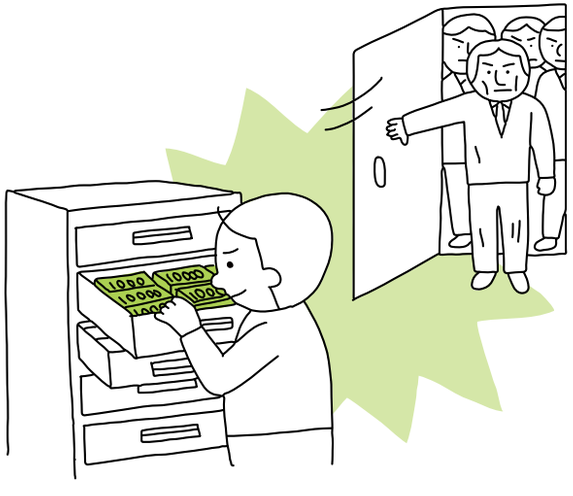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 직원 3명이 A의 캐비넷, 서랍 등을 뒤져 A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현금, 수표 및 상품권 등을 압수하였으며, 이후 A의 금품을 뇌물로 의심하면서 금품수령 경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A는 입원 중인 모친의 생사여부 및 수술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다급하게 걸려오는 가족들의 전화 호출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고 확인서를 쓰지 않고는 그 조사를 끝낼 수가 없어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적발된 돈이 부정한 돈이 아니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부모님의 병환 등을 이유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A의 주장, 그리고 성과급이나 직책수당 등은 계좌이체를 통해 별도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부정한 돈으로 오해받기 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이기에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면 공직에서 쫓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례8

직무관련자와 골프 후 불투명한 계산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모 건설사 상무 B 등 4명과 1,048,620원(262,155원/인) 상당의 골프를 친 후 그린피를 각자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B를 비롯해 다른 일행이 극구 만류하는 사이 이미 B가 법인카드로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

이에 A가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위 골프장은 자사의 회원사로서 1인당 10만 원 정도라고 하여 해당 금액을 B에게 주었으나 나머지 162,155원을 정확히 정산하지 못함으로써 162,155원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골프를 친 후 B에게 골프비용으로 회원가 10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B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며, 설령 A의 주장대로 회원가로 골프비용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비회원이면서 직무관련자의 회원가로 비용을 지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함.

일단 직무관련자와는 골프는 삼가야 합니다. 꼭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땐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고 본인 카드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을 수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사례9

연가 신청 후 직무관련자와 골프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오후반일 연가를 신청하고도 11:50경 사무실을 나와 관내 모 기업의 임원 B의 차량을 타고 골프장으로 이동하여 B, C, D와 함께 14:45부터 19:30까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오후반일 연가신청시간(14:00이후)보다 먼저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건축자재 도매업에 종사하는 C로부터 향응(그린피 14만 원)을 수수한한 혐의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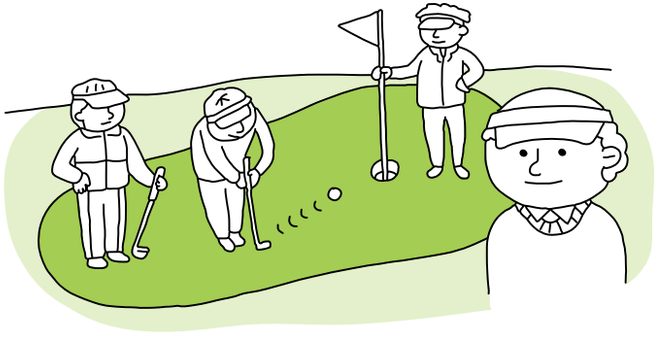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근무시간 중 골프행위 공무원 특별 감찰에 적발되었고,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함.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 자와 골프를 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사례10

선물세트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추석 무렵 직무관련자인 직원 B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수수한 사실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직무 관련 지인 B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B 상무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동안 A가 B가 근무하는 기업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선물세트 가격도 2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미만이므로 'A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 금품 · 향응 수수액 10만 원 이하는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B에 대한 문답서 및 B의 기업에서 작성한 추석 선물 배송 명단에 A가 포함되어 있고 배송품목으로 "선물세트, 금액 25만원"이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함.

선물세트의 금액이 확인될 경우 10만원 이하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습니다.

사례11

선물세트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추석 무렵 직무관련자인 직원 B로부터 108,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수수한 사실 밝혀져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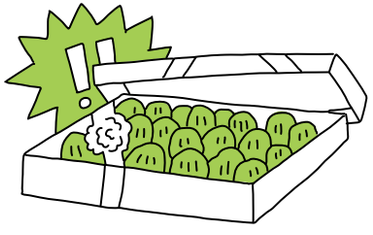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B의 기업으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기업과 관련된 업무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B의 기업에서 작성한 추석 선물 배송 명단에 A가 포함되어 있고, 배송 품목으로 "선물세트, 금액 108,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함.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은 금품수수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대상이 됩니다.

사례12

유흥주점 향응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B기관 임원들에 대한 근황과 △△지방검찰청의 수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업체 관계자를(B기관 부소장)를 만나 21:3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유흥주점에서 1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특별감찰 활동에 적발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특별감찰시기에 여성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에 출입한 것은 청렴의 의무 및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의결함.

공무원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직무관련자와 술자리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3

수상 사례금 수수 후 회식비 사용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표창) 수상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시 청소행정과 B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과 부하직원 C로 하여금 B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으며,

봉투에 300만 원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TF팀 회식비 명목으로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과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과 부하직원 D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추진TF' 업무를 총괄하였고, ○○시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및 상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함.

수상기관으로부터 수상 사례금을 받아 과회식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례14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모 기업 컨소시엄이 수행한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의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감독 ·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흥주점에서 위 기업 직원으로부터 375,000원 상당의 접대(접대부 포함)를 수수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2,124,000원의 향응 등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시 통보되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A가 위 기업 컨소시엄이 수행한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의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감독 · 검사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A가 총 6회에 걸쳐 2,124,000원 상당의 향응 등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함.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낮추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례15 공사 설계평가 청탁 및 금품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1공구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후 대학동기인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B로부터 설계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참가업체의 설계적격 심의 및 평가에서 위 건설회사 컨소시엄에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였고, 이후 공사낙찰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입찰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면 및 관계서류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을 뿐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금품 수수 시기가 설계평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A가 B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는 이의가 없으며, A는「△△-△△ 1공구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해당 건설컨소시엄은 위 도로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파면"**을 의결함.

공사 설계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어 공사 낙찰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례16

거주 아파트에 가전제품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모 유통기업 B 상무와 담소를 나누던 중에 A를 포함한 소속 기관 직원 3~4명이 ○○시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임을 B가 알게 되었으며,

이후 B 상무는 부하직원인 C 대리에게 회사 비품실에 보관된 텔레비전, 냉장고, 전자렌지, 커피포트 각 1개씩을 휴지, 샴푸와 함께 A가 거주하게 될 아파트에 배달할 것을 지시하여,

C 대리는 회사 비품실에 있던 냉장고, 전자렌지, 커피포트와 새로 구매한 텔레비전 등 총 693,44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배달하였고,

A는 퇴근 후 아파트로 배달된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발견하고 B 상무에게 연락하여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B 상무가 회사 임원이 쓰던 물품으로 부담 갖지 말고 사용하다가 버리면 된다고 이야기하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수해 사용한 사실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당시 기업규제 및 사건처리와 무관한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제활동의 기본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불공정 행위 규제 등의 공정거래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과거 보직경로 및 향후 전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기업의 사업부문에서 마케팅부문장으로 근무하는 B 상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함.

다만, 과거 오랫동안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던 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직접적인 물품사용 기간이 10여일 내로 짧았고 이미 물품을 반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함.

관련규정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TV, 냉장고 등 고가의 제품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례17

기념품으로 생각하고 화장품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외 1명은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평가업무를 진행하던 중 평가대상업체로부터 179,000원 상당의 여성화장품 세트를 각각 수수한 사실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외 1명은 기업체 현장방문 평가업무를 마친 후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자동차 조수석 뒷자리에 넣어 주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고, 사후 화장품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3만 원 미만의 기념품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혐의자들이 수수한 여성용 화장품 세트는 위 기업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배포용이 아니라 현장평가 시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별도로 준비한 179,000원 상당 고가의 물품으로,

A외 1명은 통상적인 기념품으로 보기 어려운 화장품 세트라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점, 혐의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함.

관련규정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2조에서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정함

3만 원 미만의 통상의 기념품으로 생각하고 화장품을 수수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기념품의 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18

공사낙찰 대가로 금품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각종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 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 사업자선정 평가와 관련해 모 기업 영업부장 B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또 다른 회사 C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1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어 **"파면"**으로 의결하되, 징계부가금은 A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이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하지 않음.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어 공사 낙찰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 처벌도 받아야만 합니다.

사례19

복무점검 시 금품수수 적발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간담회 참석차 방문한 청사 복도에서 ○○노조위원장의 수행원 B에게 직접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전달하고, B는 전달받은 열쇠로 A의 차량 트렁크에 128,000원 상당의 선물세트(32,000원×4개)를 넣어 둔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A의 사무실에 도착한 △△협회장의 수행원 C로부터 양주 2병(450,000원 상당)이 담긴 종이가방을 전달 받아 자신의 책상 아래에 있는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다가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 점검에 적발되었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봉1월"**을 의결하되,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A가 전액 반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미부과 의결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복무점검 등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습니다.

사례20

고액 상품권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물류담당 상무 B로부터 저녁식사 후 ○○기업의 외식상품권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이 자체 감찰에 적발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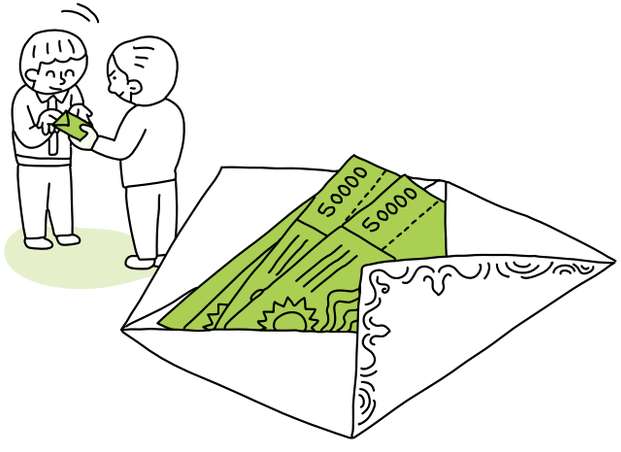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상품권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상품권은 ○○기업의 홍보용으로 개인적으로 수수할 목적이 없었고, 40년 공직생활 중 주의 · 경고 한 번 받은 적 없으며, 이번 위원회 심의 절차 후 조만간 퇴직 예정임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A가 수수한 외식상품권은 5만 원권 10매이고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으므로 홍보용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A가 수수한 상품권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50만 원을 수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됨.

다만 A가 받은 상품권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나누어 준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사개시 이후 액면가 금액을 돌려준 점을 고려하여 **"경징계"** 의결하되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음.

관련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례21 직무관련자로부터 과도한 할인 혜택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동차(주) 노사 분규 당시 알게 된 직무관련자인 동 기업의 인사노무담당 B 상무로부터 A의 승용차로 사용할 차량을 정상가격 39,640,000원보다 30%(11,892,000원) 할인 된 27,748,000원에 구입하여 금전상 특혜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노후화(15년)된 본인의 승용차 교체를 고려 중 '△△차 사주기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던 지청장으로서 순수한 의도로 구입한 것이며, 차량의 할인율 적용은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적용되고, 회사측의 판매전략 차원에서 회사 내 할인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30%까지 할인 적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의 경우에는 할인액이 200만 원이었고 퇴직 직원은 재직 당시의 근속률에 따라 최고 25%의 할인을 해주었지만 A에게는 30% 할인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2010년 30% 이상 할인율을 적용받은 대상자가 전체 판매자 중 외부인원은 3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하되 징계부가금은 제도가 도입(2010.3.22.)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부과하지 않음.

직무관련자로 부터 과도한 할인은 특혜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22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요구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B가 부모 공동명의의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상가를 23억 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건에 대하여 담당직원인 C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증여혐의가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계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결재를 올리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D 세무사에게 자금흐름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 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위원회 개최도 없이 회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집중검토팀원과 재산세과 담당주무 C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증여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신고 시인 처리한 사실이 국세청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공무원으로서 증여혐의에 대한 자금흐름 조사를 제외해 주는 대가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정직3월"**로 의결함.

실질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금품을 받기 위해 요구한 것 자체가 "중징계" 사유입니다.

사례23

부하직원에게 금품 및 향응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4월경 직무관련공무원과 그 오빠 B로부터 216,000원(1인당 72,000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고, 같은 날 21:00경 2차로 260,000원(1인당 130,000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으며, 23:01경 3차로 간 유흥주점에서 B가 만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자신의 카드로 술값 460,000원을 결제한 후 B에게 신용카드 전표와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주고 그 대금 송금을 요구하여 같은 달 B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500,000원(1인당 25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부하직원의 가족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6월경 가요주점에서 직무관련공무원인 C와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술값 570,000원(1인당 285,000원)을 C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상급기관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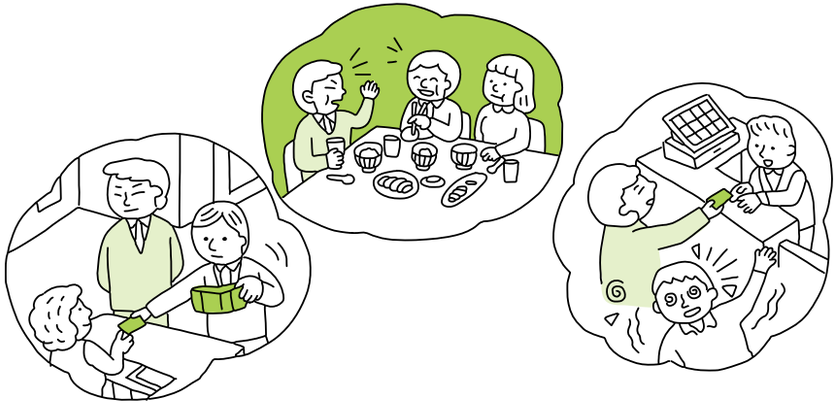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소속 부하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로 의결함.

관련판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부하직원도 엄연히 직무관련공무원이며, 비록 개인적으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로 인정이 됩니다.

사례24 직무관련자에게 간식 지원 요청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회의시간에 직원 단합대회를 위한 야구경기 관람을 제안하고, 며칠 후 오후 1~2시경 직무관련자인 모 회사 지원팀장 B에게 전화하여 "사무소 직원 단합대회에 사용할 치킨과 피자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직원을 보내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하여 운전원인 C를 통해 치킨 3~4마리, 피자 3판 등 70,000원 상당의 간식을 수령해 직원들과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하면서 위 간식을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A를 포함한 직원 등 6명은 모 기업의 ○○지역 점장 등 10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소요경비 720,000원을 위 기업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자체감사를 통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 3월 22일 이후에 A가 수수한 107,420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함.

팀원들이 함께 먹을 간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돈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간식을 지원받는 것도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사례25 직무관련자에게 기부활동 요청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평소 지인관계에 있던 B로부터 지역 소재 갤러리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랑나눔전'이라는 미술전시회가 개최된다는 연락을 받고 모 기업 팀장 C에게 전화하여 위 갤러리에 쌀 기증을 요청하였고 C는 부하직원인 D에게 "○○갤러리에 쌀 50kg을 A 명의로 기부해달라"는 지시를 하였음.

이에 D는 위 기업의 E지점 지원팀장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갤러리에 쌀을 기부하도록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E지점에서 A의 명의로 갤러리에 쌀 50kg(약 13만 원 상당)을 기증한 사실이 자체감사결과 적발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전보 조치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점, 자신의 기증을 요청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사익 추구가 아니라 자선행사 참여가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주장했으나,

당시 갤러리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랑나눔전'이라는 미술전시회에 A 명의로 쌀 50kg이 기부된 사실, A가 쌀 50kg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위 기업의 지점에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의결함.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기부활동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직무관련자에게 시키거나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사례26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관련자 65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하였고, 이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기업인 등 직무관련자 65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하고, 이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감봉2월"**로 의결.

관련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 되어 징계사유가 됩니다.

사례27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비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장모상을 치르면서 ○○시 건설현장 125명 직원들로부터 경조금품 93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상을 치른 후 출근 첫 주에 직원 10명에게 총 1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조의금이 5만 원을 초과하는 41명 직원으로부터 경조금품 총 255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국무조정실 비위자료로 통보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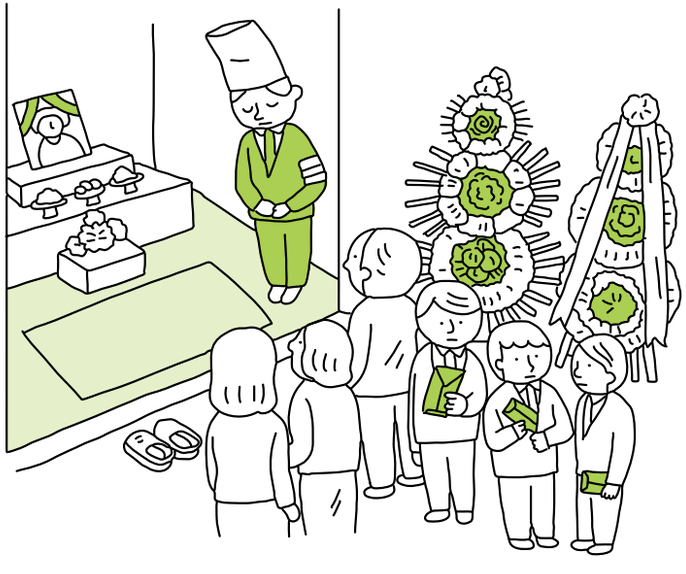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위반한 행위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

관련규정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청 명의나 청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수수하는 것은 금품수수로 인정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례28 고액의 조의금 수수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은행 B 회장과 C 감사로부터 1,100만 원이 들어 있는 조의금 봉투 2개를 받은 사실이 있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경조사 후에 A가 고액의 조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금품을 받고도 1년 6개월 이상 지나도록 되돌려 주려는 노력이나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함.

관련규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권익위원회 예규)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조의금을 수수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29 직무관련자에게 식당 소개 요청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군 소재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한 후 업무관련자 B로 하여금 식사대금 31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에 적발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장인의 생신날 큰사위로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자 자연산 횟집을 찾기 위해 ○○군에 거주하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에게 전화하여 식당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당에 승합차가 있으면 숙소로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A의 가족들이 회를 시켜먹고 있는데 B가 갑자기 나타나 계산을 하고 갔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940, 판결)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함.

직무관련자에게 지역의 맛집을 소개해달라며 차를 숙소로 보내달라고 하면 직무관련자는 식사비를 내달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례30

세무공무원의 고액 뇌물 수수

1. 징계사유

혐의자 A는 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세무조사를 가맹점이나 협력업체로 확대하지 말고 추징세액을 최소화 해달라는 명목으로 위 기업의 대표이사인 B와 다른 기업의 지점 등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의 비위는 사실로 확인되어 **"파면"** 처분됨

※ A는 형사1심 판결에서 징역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받음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 · 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뇌물을 받는 공직자는 공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사례31

뇌물수수 무죄 사건에 대한 징계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통보했으나, 직무관련자인 ○○업체 대표 B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1,467,551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사감사 시 적발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검찰에서는 A가 B의 회사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통관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청탁 또는 그로 인한 편의제공 등의 정황이 확인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해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A가 직무관련자의 휴대폰을 3년간 사용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함.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통보했더라도 그 행위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장

공금 횡령 · 유용

공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그 비위 정도에 따라
공직생활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자신은 물론 소속 구성원들이 관련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 · 경계해야 합니다.

사례1

관용차 유용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과 사무실 열쇠 보관함에 있는 공용 임대차 열쇠를 수시로 가져가 차량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10개월 동안 40회에 걸쳐 약 3㎞ 상당 거리의 출퇴근에 사용했으며, 또한 약 1㎞ 상당 거리의 골프연습장 이동을 위해 7회 걸쳐 임의 사용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고,
골프연습을 했음에도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 이후 다시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등록 · 청구하는 방법으로 79,540원(시간당 11,364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찰첩보로 접수되어 자체조사를 통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공용차량을 사적용무로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청구 · 수령한 것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함.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사적용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사례2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인과의 식사비를 업무오찬을 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관용 휴대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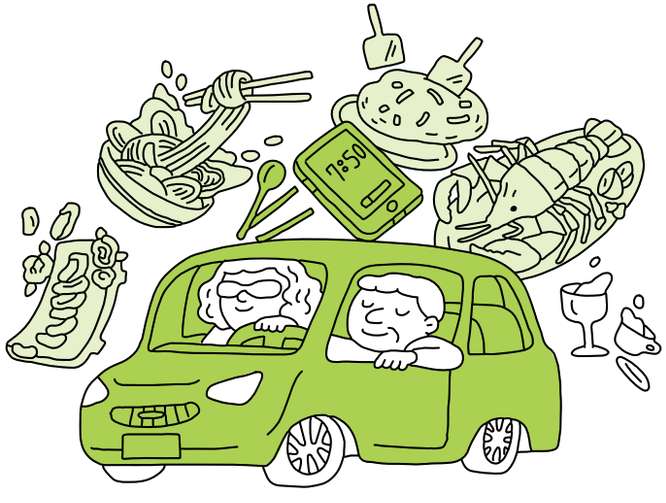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공관경비를 부정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함은 물론 이미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반납을 했다며 선처를 주장했으나,

고위공무원으로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출토록 한 것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해당 기관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3배"**를 의결함.

관련규정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외교부 훈령)

제15조 (사용)

① 공관용차량은 공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 및 공관용차량을 배정받은 공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차량을 별도 보유하여 개인용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무원으로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식사에 공금을 사용한 행위는 중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3

허위 임차비 지급 및 유용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통근차량 임차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인 총괄계장 B로부터 임차차량은 실제 운행하지 않고 임차비를 지급(계약금액 249만 원)한 후 버스회사로부터 그 금액을 돌려받아 자체 체육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승인한 사실이 있고, B는 그 중 2,241,000원을 돌려받아 해당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임차비 예산을 체육행사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비위로 **"경징계"** 의결됨.

관련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적용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체육행사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의 버스임차 계획임을 알고서도 결재한 것은 엄연히 범죄행위이며,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한 일 역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사례4

거액의 공금횡령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 유용 명세"와 같이 10회에 걸쳐 지출결의를 한 후 금고은행에 이체하였다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돌려받은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공제금 71,001,09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의료비, 생활비 등)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가족의 수술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해 오다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비를 결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료 포함 전액을 납부하여 정리한 상태라고 주장하나,

건강보험료를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기에 **"해임"** 의결함.

아무리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사례5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퇴근 무렵 B 계장으로부터 공용차량 열쇠와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받은 후 업무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단합대회에 참석했다가 다음날 오전 업무추진비 카드로 선물세트 10박스를 120,000원에 구입 후 대가 없이 선물로 제공하고, 이후 인근 식당에서 식비로 237,000원을 지출하는 등 업무추진비 총 357,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테니스대회에 참석한 후 부하직원이 운전해 온 공용차량을 인계받아 귀가했다가 다음 날 사무실로 복귀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약 1,462㎞(유류비 163,230원) 운행한 사실이 자체감사결과 적발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예산 유용 및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로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함.

주변 지인에게 간식을 사줄 때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사주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사례6

시간외 근무실적 대리입력 및 부당 수령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지방항공청에서 근무하면서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초과근무 사전승인 신청을 한 후 같은 과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실적을 대리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368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 3,934,700원 및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특근매식비 376,0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e-사람 시스템 : e-사람 시스템: 인사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2000년 2월 중앙행정기관에 구축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2. 의결요지 및 결과

공무원으로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도 같은 과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실적을 대리입력하게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기에 **"감봉3월"**을 의결함.

다만, 징계부가금의 경우 A가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금으로 납부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함.

관련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시간외 근무를 대리입력하는 행위도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8장

감독책임 및 불법지시 이행

일정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부하직원의 업무를 관리 ·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부하직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리 · 감독 노력 정도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 역시 상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잘못된 지시를 이행할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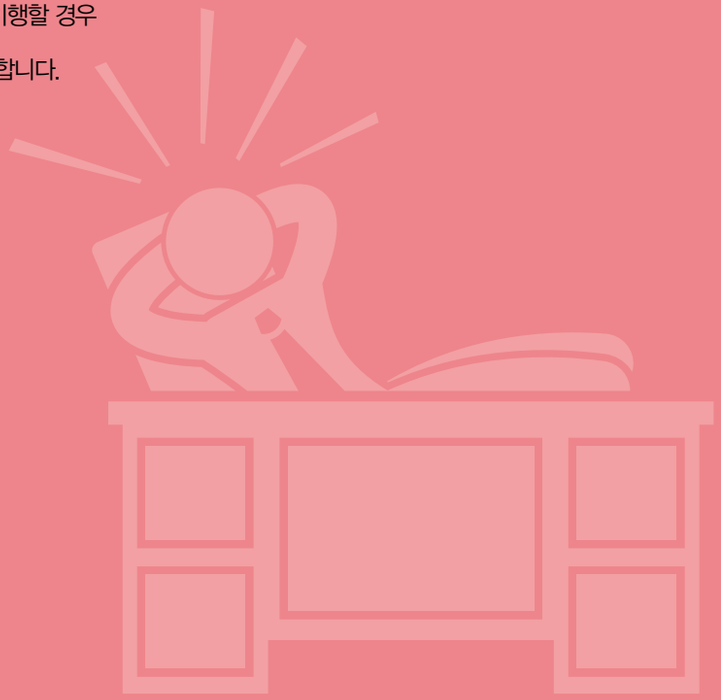

사례1

계약직 직원 관리업무 태만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계약직 직원들의 출 · 퇴근 여부 및 급여 청구서의 사실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계약직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B가 동생 1명과 자녀 3명 등 4명에 대해 허위로 급여 지급서류를 작성하여 69,843,000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A가 과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계약직 B가 근무하지도 않은 동생(20개월), 자녀 2명(21개월, 5개월)의 명의로 허위 급여서류를 꾸며 48,069,82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B가 계약직 급여 지급을 위한 통합행정시스템의 예산담당자 ID와 PW를 이용하여 계약직 급여업무를 하도록 하고, A의 도장을 맡겨 결재권자의 도장을 날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계약직 직원이 40,252,920원을 횡령함에 있어 관리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견책"**으로 의결함.

※ 관련자 조서

• 계약직 직원 B : 계약해지 및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

계약직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도록 방치하거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2

소속 직원의 횡령에 대한 감독책임

1. 징계사유

공무원 A와 B는 지출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결의서를 결재할 때에는 관련 지출증거서류의 금액을 대조 · 확인하여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 · 점검해야 하며, 해당 금액이 채권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관서운영경비 계좌와 보수공제금 계좌를 확인하여 점검해야 함에도,

소속직원 C가 상신한 지출결의서와 관련 지출증거서류를 제대로 대조 ·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서운영경비 계좌와 현금 인출이 일어나기 어려운 보수공제금 계좌의 입출금 현황을 한 차례도 확인 · 점검하지 않은 결과,

C가 지급해야 할 정당 금액보다 부풀린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비를 관서운영경비 계좌로 교부받거나 보수공제금 계좌에 이체한 후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A는 24,043,380원, B는 5,485,960원을 횡령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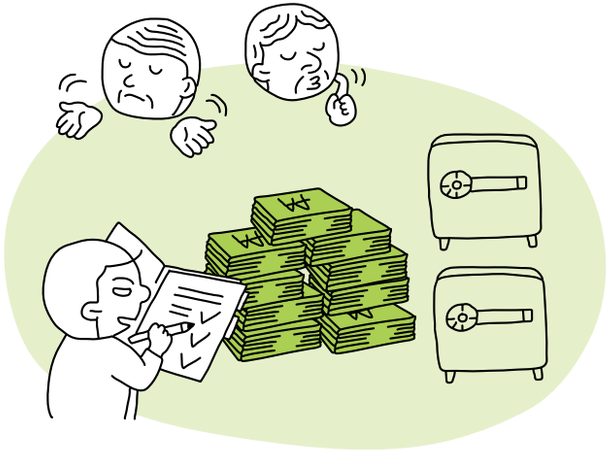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2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계산증명규칙」 제2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지출에 관한 결의서,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편철 ·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관의 관인을 날인할 때에는 납부고지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정확한 지출금액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

C가 재무관(D 관리과장)의 결재를 받은 지출원인행위서를 근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서류를 올리면 A와 B는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회계증빙서류와 지출결의 금액이 맞는지 대조하여 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A는 **"감봉1월"**, B는 **"견책"**으로 각각 의결함.

※ 관련자 조서

- 6급 공무원 C: 파면
- 과장 D: 견책

소속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감독책임 소홀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실행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과장 B의 지시로 총 7회에 걸쳐 단속된 불법고용 외국인 수를 축소하여 5개 업체에 대한 범칙금을 부당하게 줄여주고, 허위 출입국사범심사보고서 59매를 작성하였으며, 의무 고발대상 업주 2명을 고발하지 아니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6급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어 피치 못하게 과장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며 이 건과 관련하여 승진에 탈락한 것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단속된 불법고용 외국인 수를 축소하고 범칙금을 부당하게 줄여주었으며, 허위 출입국사범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무 고발대상 업주를 고발하지 않은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직1월"**로 의결함

※ 관련자 조서

• B 과장: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실행한 행위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례4

소속직원 횡령 관리 · 감독 소홀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분임재무관의 보조자이자 분임지출관의 보조자로서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서 및 지출요청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9명의 보수를 몰래 포함시켜 허위의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의 결재를 받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지급요청서를 작성하고,

분임지출관의 관인을 무단 날인한 후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162,832,540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의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에 적발되어,

분임지출관인 등을 관리하는 경리계장인 행정주사 B, 행정주사보 C, 행정주사보 D, 분임지출관 행정주사 E, 재무관리관 F는 직무태만 및 관리감독 소홀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분임지출관인 등을 관리하는 경리계장인 행정주사보 B, 행정주사보 C, 행정주사보 D는 관인 관리, 보수 지출업무 등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행정주사 E는 분임지출관으로서 보수명세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시설사무관 F는 분임재무관으로서 회계업무 등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횡령행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각각 **"경징계"**로 의결함.

※ A는 "파면" 처분됨

실무자의 비위행위는 감독자에게도 문책이 따르게 되므로 감독자는 수시로 직원들의 업무 추진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감독자는 징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사례5

담당직원 관리 · 감독 소홀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기숙사 관리요원인 B가 현금으로 받은 사용료를 고의로 누락하고 정산하여 세입요청 보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는 등 담당직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교육과정별 기숙사 사용료를 정산하면서 교육과정이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정산하여 다른 교육과정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월별로 정산하는 등 기숙사 사용료 정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의 관리기간 동안 부하직원 B가 기숙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42,928,500원을 횡령하였다가 감사 지적 후 전액 환급한 사실에 이의가 없으며, 기숙사 사용료 정산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이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감봉1월"**로 의결함.

※B는 "파면" 처분됨

철저하게 관리·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감독자는 문책을 받게 됩니다.

사례6

부하직원의 성추행 관리 · 감독 소홀

1. 징계사유

부하직원 B와 부하직원 C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이 비위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공무원 A는 상급자로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치하지 않아 관리 · 감독 소홀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부하직원들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감봉1월"**로 의결함.

※ 부하직원 B와 부하직원 C는 각각 "정직3월" 처분됨

직장 내 성추행은 본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사례7

부하직원 관리소홀 및 직무태만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보조금 업무 담당계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반납고지서 발송 여부 및 반납금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 · 점검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특히 타 부서로부터 발급받은 반납고지서 28건(27,770,000원)은 반납금 납부 여부 확인은 물론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등 업무담당 계장으로서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부하직원인 B가 과장주재 회의 시 반납고지서 미발송 현황을 각각 80건, 20건으로 허위 보고를 하였음에도, 고지서 미발송 사유 규명, 미발송 고지서에 대한 납부기간 도래 및 잔여 납부기간의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고지서 발송이나 재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B에게 반납고지서 발송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독려했고, 당시 현안인 결산심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국회심사 대응 등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라 반납고지서 발송여부를 일일이 확인 · 점검하지 못했다는 추지로 주장하였으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담당계장으로서 보조금 정산업무 관리 · 감독 소홀로 **"경징계"** 의결함.

관련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의 성질 \ 업무 관련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直上)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사항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 · 반복 업무	중요 사항	1	2	3	4
	경미 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 숫자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한 것임 (1 〉 2 〉 3 〉 4)

부하직원이 비위를 저지르는 순간 관리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장

기타
[성실 의무 위반 등]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 및 보직을 수행해야 하며,
공직생활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례1

부적절한 회계처리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3건의 문헌복사를 모 업체에 1,667,600원으로 납품계약 한 후 571,800원을 돌려받아 이 연구과제 수행에 도움을 준 관련 기관 방문 시 필요한 선물구입과 직원 회식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1회 허위 출장을 신고하고, 연구원 2명에게 6회에 걸쳐 허위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 140,000원을 기관 방문 여비, 업무협의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련 설문조사를 위해 기념품 120개 459,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설문 응답자 외의 부모들에게 10개(38,000원 상당)를 임의로 제공하였으며, 액면가 5천 원의 문화상품권 140매(700,000원 상당)를 구입한 후 65매(32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판단되어 **"경징계"**로 의결함.

회계질서 문란 행위는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사례2

공로연수 중 별정직 채용 비위

1. 징계사유

공로연수* 중인 일반직고위공무원 A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 시 자신의 고향선배 아들인 B를 별정직 비서로 채용되게 하고, 채용 목적과는 다르게 운전원으로 편법 활용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기능10급 운전원 결원이 발생하자, 특별채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B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도록 시험 진행 실무담당자인 행정주사 C에게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하여 타 응시자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경력 등이 부족한 자가 기능직 공무원(운전원)으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서류전형 심사기준 변경, 제척대상 직원을 시험위원으로 추천, 서류전형시 군운전병 경력과 교통법규 준수사항 부당평정 등 특별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사실 등이 정기 인사감사 시 적발되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공로연수: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에 원래 월급을 지급하면서 사회적응 등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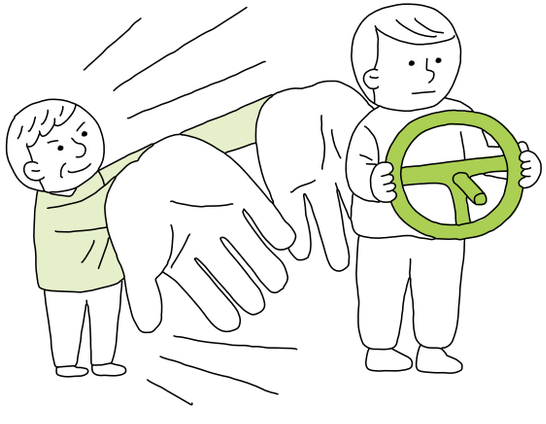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별정직 공무원의 보직관리와 기능직 운전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였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공직과 퇴직 후에도 공직자 출신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별정직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기능10급(운전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시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한 행위, 제척대상 직원을 시험위원으로 추천한 행위, 부실한 서류전형 결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해야 하는 응시자를 합격 처리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처리한 행위 등은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로 **"정직"** 상당의 징계로 엄히 문책할 것을 의결함.

공로연수 중에도 비위사실이 밝혀지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례3

전열기구 무단 반입 및 화재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개인 전열기구(전기방석)를 청사관리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무실 내에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원스위치를 끄지 않고 퇴근하여 청사사무실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 「정부△△합동청사 관리 및 운영기준」 제40조(전열기구 등 사용승인) 규정 위반

2. 의결요지 및 결과

개인 전열기구를 무단 반입 사용하여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징계 의결함.

※ 참고자료

- A에게 피해 산출액(6,579,000원) 변상조치
- 관련자 조서
  -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부실 사유로 '주의' 조치
  - 당직자: 보안점검 및 비상대비 등 당직근무 태만 사유로 '경고' 조치

관련규정

정부△△합동청사 관리 및 운영기준

제6절 소방안전관리

제40조(전열기구 등 사용승인)

① 선풍기 및 전열기를 청사 내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입주기관은 청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청사에서 발급한 사용승인증을 발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전열기구 등에 대하여는 청사에서 회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청사외부로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용 소형 선풍기 및 전열기는 사용을 금지한다.

④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근무시간(09:00 ~18:00) 중 개인용 전열기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회수조치 할 수 있다.

전열기구를 사무실 내 무단 반입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금액까지 변상해야 합니다.

사례4

국정감사 시 자료 제출 소홀

1. 징계사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요구한 '치약 중 함유된 파라벤(방부제의 일종) 함량'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A는 업무담당자로서 해당 제품의 파라벤 함량인 0.18%를 0.3%로 기재하여 작성하였고, 공무원 B는 팀장으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였으며, 공무원 C는 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해 제출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사실이 있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자료를 잘못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나, 많은 양의 자료를 다운받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고 곧바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점,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불문경고*"**로 의결함.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임

국정감사 중 국회의원이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만약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5

공직자 재산신고 소홀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록 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명의 토지 3건, 예금 2건, 금융채무 7건, 자동차 1건, 배우자 명의 예금 5건, 금융채무 4건, 모친 명의 예금 3건, 금융채무 3건 등 총 28건 306,216,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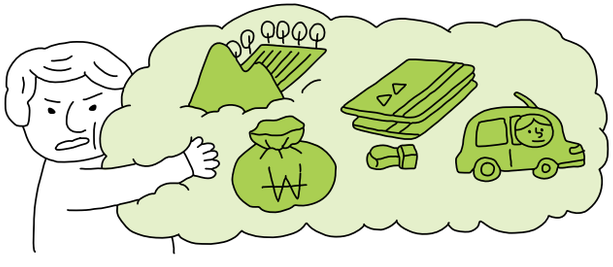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재산신고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 및 판단 착오로 재산 신고를 잘못한 것이지 고의적인 신고 누락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한 점,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 존 · 비속의 재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상기 신고가 A의 세 번째 재산신고이고, 과거 최초 신고 및 두 번째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순누락금액 발생으로 '보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가 재산신고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재산신고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견책"**으로 의결함.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 '12.12.27.)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 · 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 · 과태료 부과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증식 ⇒ 징계(해임) 및 조사의뢰 예금 항목은 순누락금액 (|누락 · 과소신고액 − 과다신고액|) 기준 적용

공직자는 재산등록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6

인사업무 부당처리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교육청 근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근평* 권한도 없는 교육감 B가 미리 특정인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하면 총무과 인사담당자 C 등이 그에 맞춰 거꾸로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인사담당자 C가 부당한 근평결정절차 등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근평위원회가 개최되어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 등을 심사 · 결정한 것처럼 근평위원회 회의록 등 근평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A에게 결재를 요청하자 그 문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하였음.
또한, 중등 교감에 대한 근평 확인자는 A이며 근평 확인점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근평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를 결재 받으러 왔을 때 근평확인위원회 개최 등 근평 확인점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장승진후보자 명부에 그대로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된 근평확인위원회와 근평조정위원회 관련 서류에 그대로 결재하는 등 부교육감으로서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공무원 근평 및 승진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사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근평: '근무 성적 평정'의 줄임말로서 공무원의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및 태도, 청렴도 등을 평가하는 일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교육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현 지방교육자치제 하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부교육감이 법령상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상위직급의 인사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사실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가 된 근무평정조정위원회 등의 경우 위원들이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는 본청 과장, 국장들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교육감의 의지와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무원 인사업무 부당 처리 등의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감봉"**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견책"**으로 의결함.

특정인 승진을 위한 근평서류 조작 등 인사업무를 부당처리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사례7

공적자료 훼손 및 증거인멸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B와 공모하여 향후 C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속부서에서 진행한 사건들의 문제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이틀간에 걸쳐 같은 부서 D 과장과 주무관 E에게 지시하여 동 사건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 등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중요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주요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손상시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가 "소프트웨어적인 조치로는 어림없다. 검찰에 가면 다 복원되니 반드시 물리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던 점,

E는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서 F와 함께 내부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4개를 본체에서 떼어냈고, 같은 날 오후 디가우저*전문 개발 · 판매 회사에 찾아가 이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불법내사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점,

A는 당일 또는 그 전날 개통한 차명 핸드폰 3대를 이용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디가우징 진행상황에 관하여 E로부터 보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사실이 인정됨.

A가 과거 오랫동안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중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손상을 교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로서 **"정직3월"**로 의결함.

* 디가우저: 하드디스크 등을 자기장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장치

불법행위는 숨기려해도 쉽게 숨길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적 자료를 훼손했다면 당연히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사례8

배우자의 밀수입 적발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본인이 국가와 국민의 대표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품위유지에 노력하고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처신해야 함은 물론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B가 대사관에서 귀국을 위해 이삿짐을 포장할 때 수출입금지 물품인 ○○ 공예품 등 ○○ 16개 총 60kg(시가 합계 3,200만 원 상당)을 인부들을 통하여 이삿짐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려다 인천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어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는 등 재외공관장이나 외무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는 배우자의 품위 없는 행위가 곧바로 공직자인 남편의 품위 없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외공무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서 재외공무원 및 그 동반가족의 행위가 바로 해당 주재국 및 교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일종의 관리 · 감독 책임을 부여하여, 「재외공관장 근무지침(5.품위유지와 솔선수범)」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 제2항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외공관장으로서 그 배우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배우자가 ○○ 밀반입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본인이 ○○ 밀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반가족에 대한 관리를 소홀한 책임이 있고, 재외공관장의 배우자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를 밀반입한 것은 외교통상부 및 더 나아가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국제적으로 국격을 훼손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기에 **"중징계"**로 의결함.

※ A 부인의 형사판결 확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A는 정직2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징계 시 "감봉1월"로 확정

관련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품위유지)

① 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외교통상부훈령)

5. 품위유지와 솔선수범

- 공관장은 국가와 국민의 대표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공관업무의 선두역할을 하며 품위유지에 노력하고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처신하여야 한다.
- 공관장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재외국민과 공관원의 주목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특정기호 및 취미에 지나치게 편향되는 행동을 자제하고, 사생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공관장은 청렴성과 도덕성, 균형감을 갖추어 재외국민과 공관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관장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설 2009.5.21〉

공무원은 가족이 잘못해도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례9

리스 차량 무상 이용 등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기업 대표 B가 보증금 9,417,000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월 923,600원씩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스 계약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과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사용하고,

△△과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약 5개월 동안 위 법인 리스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렌트 비용 매월 923,600원씩 총 4,6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서 위신을 손상하였으며,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직 공무원 C를 조사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사무실에 소환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접견하게 하는 등 호송 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고 부당한 접견 기회를 제공하여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의 비위는 사실로 확인되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로 의결됨.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례10

불법주차 단속 회피

1.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제주국제공항 3층 5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승용차량 뒤쪽 등록번호판 숫자의 일부를 물에 젖은 화장지로 가려서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2. 의결요지 및 결과

A가 주 · 정차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교통범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기본적인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 **"경징계"**로 의결함.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교통범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국가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